

##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 12. 9.부터 12. 20.까지 (10일간) 인천시설공단을 대상으로 2016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9건(본 처분 14건, 현지처분 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에 발굴한 수범사례 5건에 대하여는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감사결과 내역

| 구분 | 처분현황(건) |      |      | 행정상조치(건) |    |    |        | 재정상조치(천원) |         |         |
|----|---------|------|------|----------|----|----|--------|-----------|---------|---------|
|    | 계       | 본 처분 | 현지처분 | 계        | 시정 | 주의 | 개선권고통고 | 계         | 추징·환수 등 | 환급·감액 등 |
| 계  | 19      | 14   | 5    | 14       | 5  | 11 | 3      | -         | -       | -       |

#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

【 수 범 사 례 】

## 수범사례 1

## 불합리한 행정 제도개선

- ❖ 감사실에서 원활한 공단운영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및 건의사항 개선 통한 업무의 실효성, 공정성에 기여하고자 함.

### □ 사업개요

- 공단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업무의 실효성, 공정성 기여

### □ 추진실적

- 복무관리 시스템 개선
  - 근로기준법 위반소지 복무점검 개선(출근점검 방식변경, 정당사유 인정기준 수립)
  - 휴직·휴가자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
  - 공단 직영 공무원 지문등록 및 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확대설치
  - 시 사업장 공무원 복무관리 중장기 개선명령
- 공무원 시스템 개선
  - 공무원 상호간 호칭(직위) 정리
  - 최초 신규 인사발령시 수습기간 명확화
  - 신규 인사발령시 멘토지정 및 멘토링 활동보고 작성
  - 근무지 배치시 업무 인수인계 이행
- 문서관리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
  - 직인사용부서 및 사용용도 명확화
  - 직인인영 등록·교부관리 및 보관 기준근거 구체화
  - 전자 이미지인장 사용확대 검토

- 민원사무처리부 양식 변경(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각종 수당 부당수령 방지 개선

- 매년 반기별 공문 발송 및 전자결재 게시판 공지
- 급여프로그램 변경시 지급정지 프로그램 편성(부양가족사항)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처분 기준(안) 수립
- 여비 정산 규정 개선
  - 여비 정산 시기와 방법 규정 개정
  - 실비정산 의무화(숙박비+운임비)

□ 기대효과

- 복무점검에 대한 명확화 기준 제시
- 공무직 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책임성 부여
- 합리적이고 적절한 처분기준 설정으로 감사의 실효성
- 문서 사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여
- 부당수령 금지와 여비의 투명성 강화

## 수범사례 2

## 공공기관 우선(의무)구매 관리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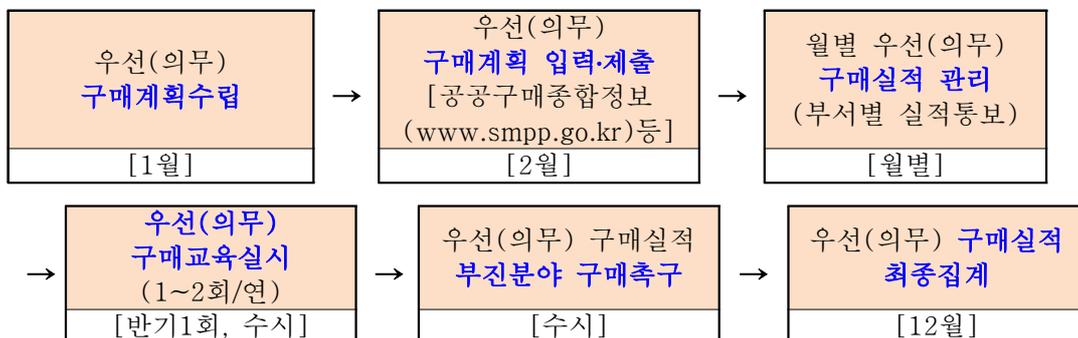
- ❖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등의 우선(의무)구매 관련 부서별 구매실적관리를 통하여
- ❖ 우선(의무) 구매율을 준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지원 등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공공기관 우선(의무)구매 준수
- 우선(의무)구매 관리체계를 변경하고, 임직원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강화

### □ 세부추진사항

- 우선(의무)구매 관리방법 변경
  - 2018년이전: 연말 공단 구매실적 일괄집계
  - 2018년이후: 월별/부서별 구매실적 관리
- 우선(의무)구매 관리체계 확립
  - 추진방향
    - 우선(의무)구매항목별, 사업부서별 월별 구매실적 관리 시행
    - 부서별 월별 구매율 관리를 통한 부진항목 구매촉구
    - 구매교육을 통한 구매항목소개 및 임직원 인식개선 노력
  - 추진방향



- 추진실적

· 연도별 우선(의무)구매실적

※ 2019년은 10월기준, 구매금액(단위:백만원)/구매비율

| 구분         |    | 기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비고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    | 50%  | 21,164<br>97.81% | 27,670<br>97.8% | 20,572<br>97.4% |    |
|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 10%  | 834<br>8.91%     | 3,804<br>13.7%  | 549<br>22.7%    |    |
| 여성기업       | 공사 | 3%   | 3,739<br>17.3%   | 320<br>5.9%     | 348<br>12.14%   |    |
|            | 용역 | 5%   |                  | 2,041<br>27.9%  | 1,437<br>30.11% |    |
|            | 물품 | 5%   |                  | 1,081<br>7.0%   | 1,306<br>9.7%   |    |
| 장애인 기업     |    | 1%   | 미집계              | 897<br>3.2%     | 565<br>2.68%    |    |
| 중증장애인 생산품  |    | 1%   | 95<br>0.55%      | 153<br>0.67%    | 211<br>1.16%    |    |
| 사회적기업제품    |    | 1%   | 517<br>2.98%     | 293<br>1.28%    | 449<br>2.47%    |    |
| 녹색제품       |    | 80%  | 1,488<br>80.29%  | 1,924<br>79.26% | 1,926<br>58.02% |    |
| 장애인표준생산품   |    | 0.3% | 37<br>0.32%      | 24<br>0.11%     | 81<br>0.45%     |    |

- 임직원 인식개선교육 실적 : 5회(총375명)

- ① 간부(팀장급이상) 인식개선교육(74명, 2018.7.27, 2019.6.21)
- ② 기술분야 임직원 맞춤교육(119명, 2018.10.10)
- ③ 신규 입사직원 기초교육(164명, 2018.6.4~6.5, 2019.9.25)
- ④ 녹색제품 구매담당자 교육(18명, 2019.10.17)

□ 기대효과

- 구매실적관리 세분화를 통한 부서별 실적관리 효율성 강화
- 부서별 구매활성화를 촉진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등의 판로확보
- 부서별 사회적 책임감 부여 및 임직원 인식개선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실현

## 수범사례 3

## 아시아드주경기장 활성화 노력

❖ 아시아드주경기장 이용객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

### □ 사업개요

- 주경기장 내 스포츠기념관 및 상설전시관 조성 방안 제안
- 적극적인 대형행사 유치·개최를 통한 수입금 창출
- 자체행사(아시아드의 날)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 추진실적 및 현황

- 주경기장 내 스포츠기념관 및 상설전시관 조성방안 제안
  - 3층 유희공간에 기념관 및 가상체험관을 전시하여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주경기장 조성 계획 수립
  - 시 관련부서에 계획서 제출 및 향후 활성화 방안시 검토 요청
- 주경기장 내 대형행사 적극 유치 및 개최 노력
  - 싸이콘서트, SBS슈퍼콘서트, K-ASIAN FESTIVAL 등 대형행사 및 제46회 용진군민의 날, 2019 서구 드론페스티벌 등 지역행사 개최
  - 2019년 대관 수입금 : 429백만원
- 아시아드의 날 추진 (총 5회, 19,000명 참여)
  - 영화가 있는날 : 인천영상위원회와 협업하여 무료 야외영화상영
  - 나눔이 있는날 : 지역커뮤니티(점단맘, 청라맘)과 함께 베틀장터 운영
  - 음악이 있는날 : 야외 음악공연 추진

### □ 기대효과

-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제공을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

## 수범사례 4

## 2019년 도로 검지기 정비방법 개선 운영

- ❖ 정기적인 도로노면 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검지기 파손에 대한 개선방법을 강구하여 검지기 파손 예방

### □ 사업개요

- 도로 검지기 설치구간 노면 정비방법 개선을 통한 검지기 복구비용 예산 절감
- 검지기 설치구간 루프선의 매립깊이 사전조사를 통해 노면 절삭 깊이를 조정 후 덧씌우기 시행
  - ※ 예시: 매립깊이 3.5cm인 경우 3cm 절삭 후 4cm 덧씌우기 시행

### □ 추진실적 및 현황

- 2019년 청라국제도시 도로노면 정비공사 시행 시 개선방법 적용
  - ※ 총 9구간 적용 → 8구간 복구비용 절감(1구간 파손)
- 청라지역 검지기 설치 현황: 56구간(27.52km)

### □ 기대효과

- 2019년 청라 검지기 복구 예산절감 비용: 45,000천원
  - ※ 검지기 복구비용 금액 산출: 헤드당 1,500천원
- 검지기 복구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교통 원활

## 수범사례 5

## 센트럴파크 해수로 수질 관리방식 개선

- ❖ 센트럴파크 해수로 내 연중 이상증식하는 가시파래 저감을 위해
  - ❖ 기존 수질관리 방식의 개선으로 관리방식 효율성 증진 및 비용 절감
- 【공단 혁신 100대 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 2018~2019 주요업무 시행계획】

### □ 현황(센트럴파크 해수로)

- 면적: 63,390㎡, 담수량: 9만톤, 수로길이: 1.8km, 수심: 평균 1.5m

### □ 문제점

- 해수로 전구간 내 연중 가시파래의 이상증식 및 고사 파래 부유물 대량 발생으로 인해 해수로 경관 저해, 수상레저시설 운영 시 어려움 발생
- “송도 인공수로 누렇게 질렀다” (기호일보, 2017.04.05.) 보도 관련

### □ 개선방안

- 이상증식하는 가시파래 저감을 위한 나노버블 발생장치 설치
  - 추진기간: 2017. 7월 ~ 2019. 6월
  - 소요예산: 368,280천원
  - 설치대수: 총 9대(안압지 1대, UN광장 6대, 이스트보트하우스 2대)
  - 추진내용: 시범사업 추진으로 효과 확인 후 센트럴파크에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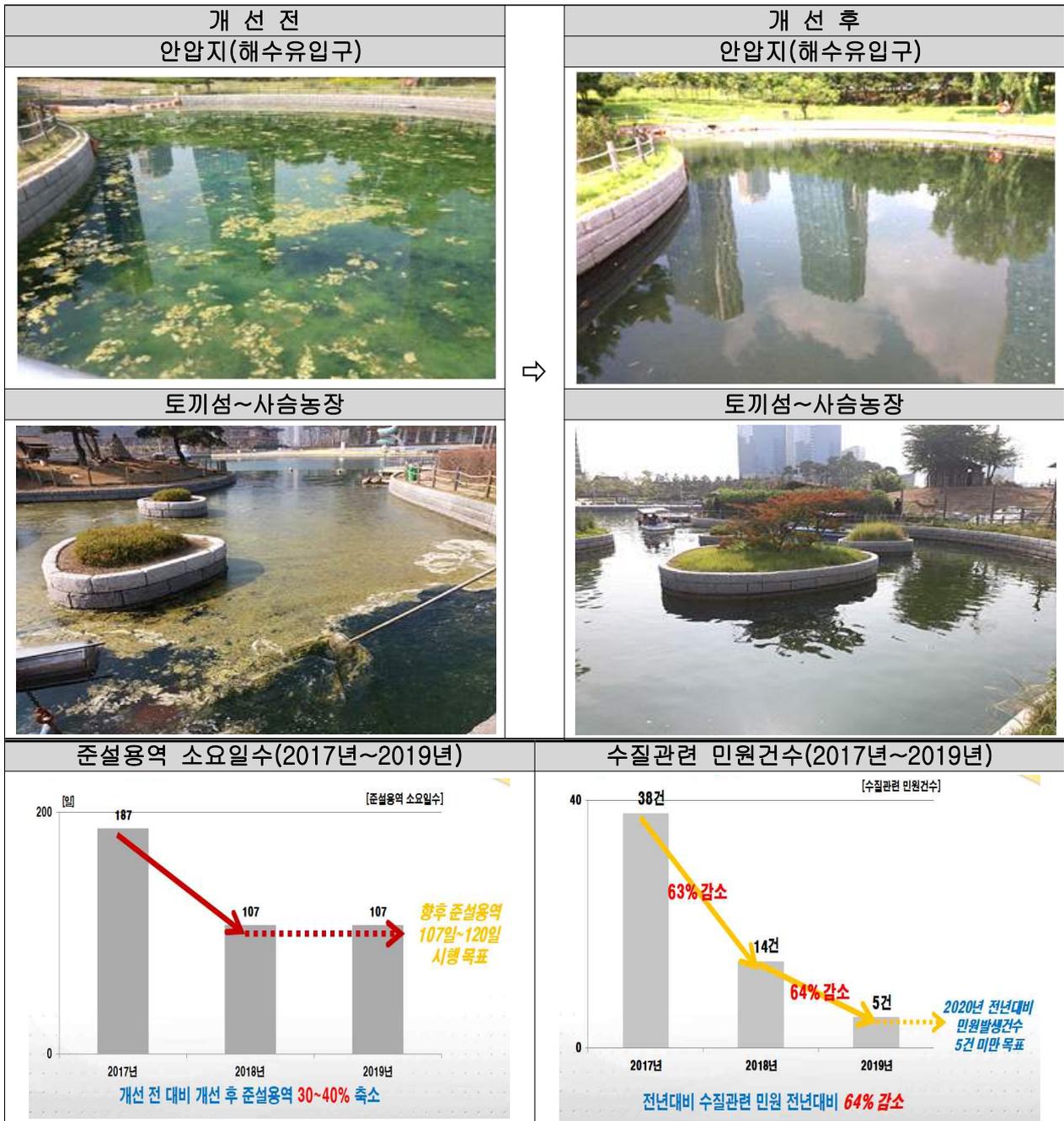
### □ 그간 추진사항

- 나노버블 발생장치 시범사업 추진 : 2017.7월~12월
- 2018년 나노버블 발생장치 설치 : 2018.6월
  - 설치대수: 7대 (안압지(해수유입구) 1대, UN광장 6대)
  - 소요예산: 284,680천원
- 2019년 나노버블 발생장치 설치 : 2019.6월
  - 설치대수: 2대 (이스트보트하우스(해수유입구) 2대)
  - 소요예산: 83,600천원

□ 기대효과

- 해수로 수질관리 비용(준설용역 등) 30~40% 절감 효과
  - (개선전) 2017년: 187일(저면+벽면) → (개선후) 2018년~향후: 107일~120일
- 수질관련 민원감소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 화학약품(차아염소산나트륨) 미사용 및 관리인력 축소 등

□ 관련사진



#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사 항 】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 요 구

제 목 ㄱ 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특히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에 한하여 계약담당자는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제6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69조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제2항을 보면 공사 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1) 설계변경, 2) 공법의 변경 3) 기술적

문제의 해결 4) 기성고의 사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조치방안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인천시설공단에서 시행한 ㄱ 공사는 2018. 5. 18. 주식회사 □□□와 2018. 5. 28. ~ 2018. 06. 25. 까지 공사 완료할 것을 계약하고 2018. 5. 28.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준공일 당일인 2018. 06. 25. 사무실 천정 석면철거, 바닥 마감 변경 등 발주청인 인천시설공단의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8,490천원을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8.06.25.에서 2018.06.30.로 5일을 연장하여 변경계약 하였다.

공사감독일지 작업내용 확인결과 변경된 공종은 사전검토 및 승인절차 없이 당초 공사기간에 이미 시행하였고 공사기간 연장된 2018.06.25. 부터 06.30.까지 작업내용은 현장정리, 준공청소, 설비공사만 기록되어 있고 설계변경 처리한 공사 내용은 변경한 기간 내에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담당자 확인결과 공사금액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 이행을 위해 5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처리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주의]** 사업시행 시 내역서 누락, 오류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사의 실정보고 승인 및 검토보고를 한 후 설계변경 처리하시기 바라며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 등을 실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 의(훈계) 요 구

제 목 ㄴ 공사에 관한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국토교통부 공사일반(KCS 10 10 05 : 2016)에 따르면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제3장 제16조(공사기간의 조정)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인천시설공단에서 시행한 ㄴ 공사는 2017. 9. 6. 주식회사 ■■■■건설과 2017. 9. 6. ~ 2017. 12. 19. 까지 공사 완료할 것을 계약하고 2017. 9. 11.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준공일 하루전인 2018. 12. 18. 1차로 2017. 12. 18. ~ 2018. 2. 28. 까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하였으며, 2차로 2018. 3. 1. ~ 2018. 3. 11.까지 총 85일간 공사를 중지하였다.

공사중지일 기준 전체공정률은 약 80%가 진행된 상태였으며, 공사 중지에 따른 변경공사 기간은 2017. 9. 11. ~ 2018. 3. 12.까지 이나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

하여 2018. 3. 23. 준공계가 제출되었고 2018. 3. 28. 공사감독관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16일의 공사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3,113천원을 부과·납부하였다.

그러나 시공사가 착공당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상에 동절기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토지 굴착이 필요한 ㉠㉠㉠㉠㉠ 토공사 공정은 2017. 10. 30., ㉡㉡㉡㉡ 토공사 공정은 2017. 11. 30.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일인 2017. 12. 18.은 기타공정으로 잔여 공사 공정만 예정되어있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동절기 공사를 중지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으로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으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공사준공 하루 전인 2017. 12. 18. 동절기 공사중지하고 공사기간을 2018. 3. 12. 까지 연장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 [주의] ① 시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 중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자)

■ ■ ■ ■ 사업단

기술☆급 ○○○○

#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회관, △△체육관

내 용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재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공단재산에 관한 사무는 경영본부장이 이를 총괄하고 공단재산에 관한 “재산관리담당”은 경영지원실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관리의 책임)에 따라 재산관리담당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관 및 △△체육관은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로서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회관은 수영장(5레인) 대강당, 강의실, 물리치료실, 당구장,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인근 노인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며, △△체육관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축구장, 수영장, 생활체육시설(헬스, 댄스실, 문화체육실)의 시설을 운영하여 인근 주민들이 체력단련, 여가활동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회관 지붕유리의 누수 발생 및 단열필름이 파손, 1층 출입구 부분의 배수로 덮개(스틸그레이팅)가 없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체육관 주경기장 지붕 누수로 경기 관람 및 시설 이용 시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정] ◇◇◇◇◇◇회관 및 △△체육관의 시설보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시어 이용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시설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권고

제 목 타 지역 업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인천시설공단 재무관리규정」 제144조(국가계약법령 등의 준용)에 공단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결과를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설공단에서는 소규모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의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인천업체와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 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권고] 소규모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의 소규모 수의계약 시 인천지역 시공사 및 업체 생산물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개 선 요 구

제 목 대행사업에 사용된 물품의 불용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실

현 황

○ 인천시설공단 위·수탁 관리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사무 현황

(단위 : 개소)

| 업무별<br>시설별   | 총개<br>소수 | 사무        | 행정재산 관리위탁 및 사무 |     |      |          |          |          |                            |
|--------------|----------|-----------|----------------|-----|------|----------|----------|----------|----------------------------|
|              |          | 청사<br>관리* | 도 시<br>기반**    | 공동구 | 공원녹지 | 체육<br>시설 | 문화<br>복지 | 상가<br>관리 | 주차시설                       |
| 시 설<br>개 소 수 | 117      | 45        | 3              | 3   | 3    | 7        | 6        | 15       | -공영 33<br>-버스공영1<br>-시청부설1 |

\* 청사관리 : 市산하시설중 환경미화, 기계직 등 인력관리

\*\* 도시기반 : 도로, 교량, 우수지, 교통, 기전 등

내 용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6조 등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등을 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에는 수탁자산 회계처리시 공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명목이 자치단체 소유인 자산) 등은 재무제표에 공사·공단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수탁자산으로 표시하고, 동 자산에 대한 수선비 중 자본적지출도 수탁자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수탁자산임을 입증(자치단체의 장과 합의하고 상호 합의된 사항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함)할 수 있는 경우, 공사·공단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라도 수탁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설공단 「회계규정」 제79조 제2항 및 「물품관리 규정」 제30조 제1항에는 물품출납원은 대행사업 관련 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자가 인천시설공단(수탁자)에게 지급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취득한 차량, 물품 등은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무상대부한 경우로써, 재무제표에서도 공단의 유형자산과 구분 작성한다. 따라서 인천시설공단은 차량, 물품 등에 대한 위탁자의 불용결정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불용결정없이 인천시설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총 1,738건 489,265천 원 상당액을 임의로 처분하여 수탁자산 관리에 소홀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개선] 위탁자의 불용결정 후 처분하도록 관련된 인천시설공단 내부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 인천광역시 주의요구

제 목 도로 노면 정비공사(연간단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사업단, ▲▲사업단

내 용

인천시설공단 ▼▼▼▼본부 ●●●●●●사업단(이하 “●● 사업단”), ■■■■■■  
■■■사업단(이하 “■■■사업단”), ▲▲사업단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물을 제공하고자 매년 도로 노면 정비공사(연간단가)를 자체적으로 설  
계 및 발주, 감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회계규정」 제144조(국가계약법령 등의 준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8절 보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다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품셈 등)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  
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에는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주청의 범위)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124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 1. 도로 노면 정비공사(연간단가) 예정가격 과잉 계상에 관한 사항

●● 사업단에서는 2017년, 2018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절삭 및 덧  
씌우기(불연속) 예정가격을 산출하면서 노면 파쇄기 기계경비 단가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발표한 단가(국산 장비)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대한건설협회 건설

기계 장비 정비 산출표에 잘못 명기된 외산 장비로 계상(환율 적용)하여 2017년 주·야간 a당 12,976원/13,177원 및 2018년 주·야간 a당 2,588원/2,661원 만큼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작성 계약하고 준공하였다.

또한 ▲▲사업단에서는 2019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절삭 및 덧씌우기(불연속) 예정가격을 산출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도로포장 1-11-2 따라 노면 파쇄기 톱날 소모 재료비를 a당 3.45ea 계상하여야 함에도 a당 4.83ea 계상하여 a당 8,248원을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작성 계약하여 준공하였다.

## 2. 도로 노면 정비공사(연간단가) 착공에 관한 사항

‘동절기’란 지역에 따라 시기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11월부터 다음년도 2월 사이의 기간으로 그 이후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 노면의 파손이 많은 기간이다

그러나 인천시설공단 ▼▼▼▼본부 3개 사업단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 노면 정비공사(연간단가)의 공사기간을 4월(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 노면 파손(포토홀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 해빙기(3월부터 4월까지)에는 포대아스콘(록하드) 등으로 자체 응급 도로 복구만을 시행하고 있어 규모가 큰 노면 파손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으며, 정부 시책인 시설사업비 신속집행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사 설계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② 도로 노면 정비공사(연간단가)에 대하여 조기 발주를 통한 신속집행 및 해빙기 도로 노면의 신속한 정비로 교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주의(훈계)요구

제 목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면 물품구매 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조사하고 동일 품목·규정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적용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주청의 범위)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제 124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설계도면, 지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 1. 주차장 카스토퍼(재료비) 예정가격 과다 계상에 관한 사항

인천시설공단(●●●●사업단 □□팀)에서는 ‘□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내역서 상 주차 카스토퍼(150×120×750mm) 1ea 예정가격을 29,404원(설치비 포함)으로 계상 2019. 4. 26. 128ea 설치하였다.

그러나, 동일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 1ea 가격은 21,200원(설치비 포함)으로 조달(관급)로 구매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급으로 계상하여, 2,549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2. 시청 부설주차장 카스토퍼 재 활용에 관한 사항

인천시설공단(●●●●사업단 □□팀)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청 부설주차장 내 124면의 카스토퍼 248ea(124면× 2ea)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2019년 3월 인천시에서 발주한 ‘B 공사’와 관련 업무 협의 시 주차관제 시스템 및 주차 부스 이동 설치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나, 인천시설공단 재산인 카스토퍼(1ea 39,800원)에 대하여는 주차장 소모품으로 인지하여 재활용이나 이동설치 등의 공단 의견을 제시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주부서에서는 전량 폐기물 처리하였다.

보통 카스토퍼의 내구 연한은 7~10년으로 앵카만 교체하면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사업부서와의 협의 소홀로 개략 9,870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공사 설계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② 공단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재산(물품)에 대하여는 예산낭비 및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재활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로 재산(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②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① □□□□체육관(前, ●●●●사업단)

사무 ○급 ◇◇◇

② ●●●●사업단

실무 ○급 ◇◇◇

# 인천광역시

##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5,000천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 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목공사업(종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시설공단은 전문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0천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격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 공사’ 등 총 2건에 대하여 전문공사 자격이 없는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업무를 추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주의(훈계)요구

제 목 공영 주차장 시설물(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인천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자와 물품사용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13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에 따라 물품총괄조정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 년도마다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인천시설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1992. 7. 1.)」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 1. 주차권 카드 발권기 재산관리 대장(물품관리시스템) 등재에 관한 사항

인천시설공단(☒☒☒☒사업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투명한 주차요금 징수 및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던주차권 카드 발권기 19대를 차량번호 인식기 49대(427백만 원)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체된 주차권 카드 발권기는 주차장 관제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개별 물품인데도 재산관리대장(물품관리시스템)에는 개별 물품으로 등재 하지 않고 주차장 별 관제기 1식 등으로 등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부터 교체된 주차권 카드 발권기가 또한 재산관리대장(물품관리시스템)에 변경 등재 없이 여전히 1식 등

으로 관리 되고 있어 물품의 분실이나 무단 처분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2. 주차권 카드 발권기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인천시설공단 물품관리규정」 제35조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이 시달한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따라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 하는 정기 재물 조사를 매년 12월31일 현재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재물조사 후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6조에서 제3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관리전환이나 불용품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설공단(☒☒☒☒사업단)에서는 공용주차장 차량번호 인식기를 교체함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해진 주차권 카드 발권기 19대를 제27조(관리전환) 및 제30조(불용결정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에도, 15대는 관리전용 및 불용의 결정 없이 ●●●●관 공영주차장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7년 지하창고 환경정비 시 전량 폐기 처분하였고, 2018년 교체한 4대는 창고(3대)와 현장(1대)에서 보관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인 천 광 역 시

## 주의 · 개선 요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실(@@@@팀)

내 용

인천시설공단(○○○○실 @@@@팀)에서는 직원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채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면접위원 등 시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철저한 시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면접시험은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최종 결정단계로서 면접위원은 누가보더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인천시설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조제4항제3호에서는 시험위원 선정시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2019년도 조경 및 영선분야 기간제근로자(5명)채용과 관련하여 2019.1.17.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응시자 21명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14명에 대하여 2019.2.13.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면접위원 3명중 2명이 &&&&& ■■■■ 팀장과 ■■■■ 대리이며, 이들은 응시자중 3명(■■■■■, ■■■■, ■■■■)과 2018년도에도 &&&&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그대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는 등 총 12개 부서 및 사업장에서 면접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인천시설공단(○○○○실 @@@@팀)에서는 공단내 채용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수의 부서 및 사업장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중 면접위원 선정 업무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시정 내지 개선하지 않는 등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주의·개선) 직원 채용관련 면접위원 선정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실(○○○○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6조제2항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인천시설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과 제8호 아목의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설공단(○○○○실 ○○○○팀)에서는 2019년 제1회 직원채용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추정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지 인쇄 및 문제 출제 등 비밀문서의 인쇄와 시급한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전체 채용대행용역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업체선정시에도 원가계산방식이 아닌 단순 비교견적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상기와 같이 인천시설공단(●●●●실 ●●●●팀)에서는 직원 채용대행 용역시 일부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건을 이유로 공개입찰로 시행해야 할 계약건을 편의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주의·개선) 직원 채용대행용역시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라며, 계약업무 담당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지하도상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인천시내 지하도상가는 지난 1972년 5월 ▲▲▲▲ 상가가 최초 준공된 이후 2000년 ▼▼▼▼ 상가를 마지막으로 총 15개소의 지하도상가 3,579개 점포가 조성되어 있으며, 권역별로는 동인천역세권 5개소, 부평역세권 5개소, 기타 역세권에 5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 1. 지하도상가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

현재 지하도상가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15개소의 상가 중 배다리, 제물포 등 2개소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영관리하고 있으나, 잔여 13개소는 상가법인이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관련법규정의 의무이행 및 안전유지 업무까지도 상가법인 주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설공단 ○○○○사업단에서 전체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및 안전진단,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는 있으나, 정작 지하도상가를 직접 관리·운영 중인 상가법인은 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책임의식 결여 등 안전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천시설공단과 상가법인의 시설안전·유지관리 업무 범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의 안전분야 관리주체를 단일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 지하도상가 통합관제센터 구축 필요

현재 지하도상가 전체 15개소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2개소 이상의 상가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점포 및 사무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영업하고 있음에도 상가별 화재수신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인접한 지하도상가 화재 발생 시 인지가 늦어 대피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설공단과 부산시설공단에서 구축한 사례와 같이 관리주체가 다수인 동인천역세권과 부평역세권 지하도상가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화재수신반 통합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통합 화재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발생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감시 및 재난 상황지휘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도상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분야 관리주체 단일화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나, 조례 개정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위탁기관인 인천광역시 ●●●●과와 협의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안전관리실

내 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sup>1)</sup>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및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설치기관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부)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최소 2년마다 이수하여 사용법 및 관리법 숙지,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매월 점검한 결과와 사용내역 등은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신고가 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법정 의무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설치한 체육시설 4개소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 특성상 응급상황(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자율적으로 설치한 문화·공원·생활시설 13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소모품인 패드와 배터리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교체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안내표시 및 유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한 13개소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신고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향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장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 (시정) ①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인 패드와 배터리는 즉시 교체하여 항상 사용가능하도록 관리하시고,
- ② 미 부착된 설치 안내표시 및 유도 안내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부착하시기 바라며,
- ③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전산망에 등록·관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응급장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시설공단

관 계 부 서 ○○○○○○사업단

내 용

인천시설공단 ○○○○○○사업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한 공동구<sup>2)</sup>를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 1. 공동구 긴급복구계획 미 수립

공동구 관리자(공동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5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매년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공동구 전 구간을 매일 순찰하여야 하며, 공동구의 안전등급이 “A”등급인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3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4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과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여 제반 인적·물적 가용요소와 운용계획 등을 망라하는 ‘비상사태별 대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전력·통신 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소통대책 등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이와 관련하여 공동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년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공구별로 일상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하고는 있으나, 공동구 수용시설인 상수도 배관 파손에 따른 침수 발생 등 피해유형별·정도별로 수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인천시설공단 ○○○○○○사업단에서는 송도 □,□공구 공동구 내 설치된 무선 통신설비가 내부 환경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해 통신 두절구간이 발생됨에 따라 무선 통신 불통구역 해소를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계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31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야 하며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설공단 ○○○○○○사업단에서는 공동구 무선통신설비 보수공사 준공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안전모, 안전화, 상체식 안전벨트 등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인 작업자의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물품 납품사진 등은 제출하였으나, 안전장비 지급대장 누락 및 일부 지급된 안전장비를 착용한 공사현장 작업사진이 없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공사감독자가 관련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증빙서류의 보완 지시 없이 준공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정) 공동구 수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유형별·정도별로 실효성 있는 긴급복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